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법적 검토 재고*

김 창 록**

차 례

- I. 머리말
- II. 문제의 제기와 국제사회의 호응
 1. 문제의 제기
 2. 국제사회의 호응
- III. 일본 및 한국 정부의 초기 대응
 1. 일본 정부의 대응
 2. 한국 정부의 대응
- IV. 일본에서의 소송
 1. 고소, 고발
 2. 민사소송의 제기
- V. 소송의 확산과 종결
 1. 미국에서의 소송
 2. 일본에서의 소송의 종결
- VI. 일본 및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와 새로운 가능성
 1.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와 입법 추진의 움직임
 2.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와 헌법소원
- VII. 성과와 과제 - 맷음말에 대신하여
 1. 법적 노력의 성과와 한계
 2.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
 3. 법적 해결을 위해

* 이 논문은 2008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머리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의 “정신적 가시”¹⁾라고 불릴 만큼 한일관계에서 반드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그것은 제국주의 국가 일본이 여성들에게 ‘성노예’를 강요했다는 그 침해의 극도의 심각성 때문에 전 세계로부터 주목받아 왔다.²⁾ 그래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해결이 모색되어 왔으며, 이미 그에 관한 연구문헌의 목록은 방대하다.³⁾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무엇보다 법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우선 그것은 그 성질상 제국주의 국가 일본의 ‘죄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죄과’에 대한 책임 추궁이, 조약을 포함한 법의 해석과 소송과 입법을 둘러싼 ‘법적’ 공방 속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고찰 중에서도 특히 ‘법적 고찰’은 중요한 테마이다.

필자는 1990년대 중반부터 아래 본문의 각주에서 인용하는 일련의 글들을 발표하고, 미국 컬럼비아지구 연방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에 의견서를 제출하고(2001.4), 일본의 나고야(名古屋)고등재판소(2006.2.2)와 부산지방법원(2006.12.15)과 헌법재판소(2009.4.9)에서 진술을 하고, 각종 강연과 심포

1) “‘위안부문제는 과거청산 아닌 인권문제’,” 『조선일보』 1998.02.26 20:57(http://news.chosun.com/svc/_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1998022670472).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2월 26일 청와대에서 한일의원연맹 소속의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 발언 중의 표현이다. 이하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2010년 10월 20일에 검색한 결과에 따른다.

2) 다만 이러한 주목이 “동아시아 제국주의의 잔학행위를 방관해 온 국제 사회와 일본 국가의 침묵, 위안부를 포함하여 징용, 징병 등 식민주의 피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한국 국가의 침묵, 여성의 성 규범과 관련한 가부장제 사회의 침묵, 가족과 이웃 등 주변 커뮤니티의 침묵, 위안부 생존 당사자들의 침묵 등 중충적인” 침묵(양현아, “증언과 역사쓰기 - 한국인 ‘군위안부’의 주체성 재현,” 윤해동 외4 엮음, 『근대를 다시 읽는다 2』, 역사비평사, 2006, 415쪽)이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뒤의 일이라는 점은 특별히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3) 동북아역사재단 편, 『한일 역사현안 관련 일본군 위안부 연구논저 목록(상, 하)』, 동북아역사재단, 2009 ([http://www.historyfoundation.or.kr/DATA/BBS1/연구논저-위안부\(상\).pdf](http://www.historyfoundation.or.kr/DATA/BBS1/연구논저-위안부(상).pdf); [연구논저-위안부\(하\).pdf](http://www.historyfoundation.or.kr/DATA/BBS1/연구논저-위안부(하).pdf)) 참조.

지엄 발표·토론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적 노력에 동참하면서, 각각의 단계에서 나름대로의 법적 고찰을 제시해왔다.

이 글은 필자의 위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중요한 원인인 한 1910년 한일조약 체결 100년이 되는 해를 맞아,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1990년대 초로부터 20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문제에 대한 그간의 법적 고찰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하 본문에서는, 먼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적인 노력의 실상을, 주로 한국인 피해자에 초점을 맞추고 또 시간적인 순서에 따르면서 재정리하고, 이어서 현재의 단계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와 그 극복의 방향을 찾아보기로 한다.

II. 문제의 제기와 국제사회의 호응

1. 문제의 제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88년 4월에, 산하에 정신대연구회를 두고 그 문제를 연구해 오던 한국교회여성연합의 주최로 ‘여성과 관광문화’에 관해 개최된 국제세미나에서, 1980년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조사해온 윤정옥 교수⁴⁾가 한 강연을 통해 최초로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이 세미나 직후부터 한국의 여성단체들은 일본 정부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요구는 한국의 여성단체가 1990년 10월 17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보다 구체화되어, “1. 일본 정부는 한국인 여성들을 종군위안부로서 강제연행한 사실을 인정할 것. 2.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할 것. 3. 만행의 전모를 스스로 밝힐 것. 4. 희생자를 위하여 추모비를 건립할 것. 5. 생존자와 유족들에게 배상할 것. 6.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교과에서 이 사실을 계속 가르칠 것”⁵⁾ 일본

4) 이하 언급되는 인물의 직함은 당시의 직함으로 한다.

5) 吉見義明, 『從軍慰安婦』, 岩波書店, 1995, 4쪽.

정부가 구체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으로서 제시되었다.⁶⁾

그리고 피해자측의 이러한 문제 제기는, 1990년 11월 16일에 37개의 여성단체와 개인들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으로 줄여 씀)를 발족시켜, 피해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한국 및 일본의 국회 및 정부에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집회를 계속하는 등의 활동을 펼침으로써 더욱 조직화되었으며, 이후 국내외에서 규탄집회, 성명, 기자회견, 서명운동, 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확산되었다.⁷⁾

2. 국제사회의 호응

피해자측의 문제 제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한 것은 국제사회였다. 1992년 2월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제기됨으로써 국제문제화된 이후, 이 문제는 유엔 인권위원회와 유엔 차별 방지소수자보호소위원회, 유엔 현대노예제 작업부회,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며, 그들 국제적인 무대에서는 각종의 NGO들이 유엔에 대해 조사·권고를 요구하며 활동을 이어갔다.⁸⁾

국제사회의 호응 중 우선 주목되는 것은 유엔의 NGO인 국제법률가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 이하 ‘ICJ’로 줄여 씀)의 보고서로서, ICJ는 1993년 4월에 필리핀·한국·북한 및 일본에 조사단을 보내어, 연인원 40명 이상의 증언자로부터 증언을 청취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조사·연구하여 「위안부 - 끝나지 않은 시련 (Comfort Women - an unfinished ordeal)」이라는 제목

6) 2010년 10월 20일 현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홈페이지에는 일곱 가지 요구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즉 “1. 일본군 ‘위안부’의 범죄 인정, 2. 진상 규명, 3. 국회 결의 사죄, 4. 법적 배상, 5. 역사교과서 기록, 6. 위령탑과 사료관 건립, 7. 책임자 처벌”(http://www.womenandwar.net/menu_01.php)이 그것이다.

7) <http://www.womenandwar.net/> 참조.

8) 이들 단체의 활동에 관한 상세한 설명으로,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 -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제2부 및 제3부 ; 戸塚悦朗, 『日本が知らない戦争責任—日本軍「慰安婦」問題の眞の解決へ向けて』, 現代人文社, 2008 ; 도츠카 에츠로 / 박홍규 역, 『위안부가 아니라 성노예이다』, 소나무, 2001 참조.

의 보고서를 작성, 1994년 11월 22일 발표했다. 그 최종보고서⁹⁾에서 ICJ는, 일본군이 ‘위안부’ 문제에 전면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생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성적 ‘서비스’를 강요당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그에 대해 법적 평가를 했다. 즉, ICJ는, ‘위안’ 행위를 강요함으로써 일본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인가, 일본은 국제법상의 책임을 지고 있는가, 그 책임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자신이 재판을 통해 추급할 수 있는가라는 등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중요한 법적 쟁점들에 대해, 상세한 법적 추론을 토대로 ‘예스’라고 대답하면서, “일본이 피해자에 대한 도의적 법적 책무를 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라고 단언했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이다. 1994년 3월 유엔 인권위원회에 새롭게 설치된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자’에 임명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는, 남북한과 일본을 방문하거나 자료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1996년 2월에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일반적 보고서의 추가문서로서 독립된 보고서를 이루는 「전시의 군사적 성노예 문제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및 일본 파견 조사 보고서 (Report on the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라는 제목의 보고서¹⁰⁾를 완성하여 공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자는, 일본군 ‘위안부’를 “군사적 성노예”라고 단정하고, 국제관습법화된 국제인도법을 일본이 위반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했다. 그리고 대일강화조약과 2국간 조약에 의해 해결이 끝났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이들 조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해결의 상태에 있다고 못박았다. 그리고 그 결과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국제인도법상 국가로서 법적 및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명언했다. 나아가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

9) 그 중요 부분의 번역은 김창록·이승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여성부 연구보고서), 2003, 40쪽 이하 참조.

10) UN Doc. E/CN. 4/1996/53/Add. 1. 그 중요 부분의 번역은 김창록·이승우, 위의 책, 56쪽 이하 참조.

자는, 일본 정부가 가능한 한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하면서, 구체적인 권고로서 국가로서 법적 책임을 승인할 것, 국가로서 피해자에게 보상할 것, 일본군 ‘위안부’의 모집과 제도화에 관여한 가해자를 특정하고 가능한 한 처벌할 것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맥두걸 보고서이다.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전시성 노예제 특별보고자’ 게이 맥두걸(Gay J. McDougall)은, 1998년 8월 「무력 분쟁하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노예제 유사관행」에 관한 보고서의 첨부문서로서 「제2차 대전 중 설치된 ‘위안소’에 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의 분석 (An Analysis of the Legal Liability of the Government of Japan for “Comfort Women Stations” Established during the Second War)」¹¹⁾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인권소위원회에서 암도적인 지지로 채택되었으며, 2000년 제52회기 인권소위원회에서는 「맥두걸 보고서」의 업데이트본이 제출되어 채택되었다. 다년간에 걸친 조사활동을 토대로, ICJ보고서와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그것을 한 단계 발전시킨 이 보고서에서 맥두걸 특별보고자는, 일본군 ‘위안소’의 본질이 ‘강간소’였음을 지적하고, 노예제의 금지, 전쟁범죄로서의 강간금지, 인도에 대한 죄의 금지 등에 관한 당시의 국제법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적용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게 가해진 잔학행위에 대해, 구제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구제는, 일본 정부에 의한 전 ‘위안부’에 대한 개인배상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 … 나아가 강간소의 설치 · 감독에 책임이 있는 정부 · 군관계자를 소추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결론지었다.

마지막으로 주목되는 것은,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2000 For the Trial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 이하 ‘2000년 법정’)이다. 아시아 여성단체들의 이니시어티브에 의해 2000년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개정되어, 남북한 · 중국 · 대만 · 필리핀 · 말레이지아 · 인도네시아 · 동티모르 · 네덜란드 검사단의 기소와 판사단의 판결로 이어진 ‘2000년 법정’은, 2001년 12

11) UN Doc. E/CN.4/Sub.2/1998/13/Add. 1. 그 중요 부분의 번역은 김창록 · 이승욱, 앞의 책, 85쪽 이하 참조.

월 4일에 이르러 최종판결을 제시했다.¹²⁾ 그 판결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행위가 인도에 대한 죄로서의 강간과 성노예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천황 히로히토(裕仁)를 비롯한 10명의 피고인이 ‘개인의 관여 책임’과 ‘상관의 책임’에 관해 유죄라고 선언하고, 일본 정부가 취해야 할 구제조치로서, ‘위안제도’가 국제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면적으로 인정할 것, 법적 책임을 지고 완전하고 성실한 사죄를 할 것, 적절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할 것, 군성노예제에 관해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기구를 설립하고 자료를 공개하고 역사에 남길 수 있도록 할 것, 기념관, 박물관, 도서관을 설립하여 희생자와 생존자들을 인지하고 그들에게 명예를 표시할 것, 모든 수준의 교과서에 의미 있는 기술을 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할 것, 정부가 소유하는 ‘위안소’에 관한 모든 문서 기타의 자료를 공개할 것, 주요한 실행행위자를 밝혀 내어 처벌할 것 등을 제시했다.

위와 같은 국제사회의 동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법적 판단이 종결되었으며, 그 판단에 따라 취해져야 할 조치에 대한 합의 또한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즉, 그 보고서들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인도에 대한 범죄, 노예제 금지 등의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이며,¹³⁾ 그 행위에 대해 일본인 개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되고,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죄와 배상을 하고 역사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범죄자들을 소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법적 상식임이 명확하게 선언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 12) 2000년 법정의 구체적인 전개과정에 관해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보고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1 ; VAWW-NET Japan編, 『女性國際戰犯法廷の全記錄』 I · II, 凱風出版, 2002 참조. 그리고 그에 대한 분석으로는 조시현,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 김부자 외 10,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2009 ; 양현아, “2000년 법정을 통해 본 피해자 증언과 법 언어의 만남”, 같은 책 참조.
- 13)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김창록 · 이승우, 앞의 책, 9쪽 이하 참조.

III. 일본 및 한국 정부의 초기 대응

1. 일본 정부의 대응

하지만, 국제사회의 이러한 목소리는 일본 및 한국 정부에게서는 적극적인 반향을 얻지 못했다. 우선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처음 제기되자, 거듭하여 “민간의 업자”가 한 일일뿐 일본이나 일본군과는 관계없는 일이라며 책임을 전면 부정했다.¹⁴⁾ 그러나 1992년 1월 11일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교수가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6점의 증거자료를 발견하여 신문에 공개하자,¹⁵⁾ 다음날인 1월 12일 관방장관이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했고, 1월 13일에는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お詫び)의 마음을” 전한다며 사죄의 담화¹⁶⁾를 발표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자료 조사와 피해자 증언 청취를 실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1993년 8월 4일 관방장관 담화를 발표하여, 1. “위안소의 설치 ·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 2.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이 있고, 나아가 관현 등이 직접 이 일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다,” 3.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아래에서의 가혹한 것이었다,” 4. 위안부 문제는 “당시의 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문제”이다, 5. 전(前) 위안부 여러분에게는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전한다”¹⁷⁾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렇게 사과를 하고 난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은 인정할 수 없고, 설사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양국간 조약에 의해 끝난 문제이며, 따라서 더 이상 배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 대신에 일본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민간모금에 의한 위로금의 전달이었다.

14) 예를 들어 1990년 6월 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의 모토오카 쇼오지(本岡昭次)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日本參議院, 『豫算委員會會議錄第一九號』, 1990.6.6, 6쪽.

15) 吉見義明, 앞의 책 참조.

16) 金明基, 『挺身隊와 國際法』, 法志社, 1993, 206쪽.

17) “慰安婦關係調查結果發表に關する河野内閣官房長官談話,” 1993.8.4, (<http://www.mofa.go.jp/mofaj/area/taisen/kono.html>).

이 카드는 1994년 8월 31일 무라야마 토미이찌(村山富市) 수상에 의해 발표되었고, 뒤이은 하시모토 류우타로오(橋本龍太郎) 정부에 의해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이하 ‘아시아 여성기금’으로 줄여 씀)으로 구체화되었다.¹⁸⁾ 일본 정부와 ‘아시아 여성기금’은 1996년 8월 14일 피해자의 저항이 가장 적고, 피해자의 경제상황이 가장 나쁜 필리핀에서 피해자 4명에게 2백만엔의 ‘위로금’과 하시모토 수상의 ‘사과와 반성의 편지’를 교부했다. 그리고 1997년 1월 11일에는 일본의 ‘아시아 여성기금’ 관계자들이 서울에서 피해자 7명을 만나 마찬가지로 위로금 2백만원엔과 함께 하시모토 수상의 편지 등을 전달했다.¹⁹⁾ 하지만, 기금모금 및 전달의 형식에서도 이미 알 수 있듯이, 이것은 결코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 수상의 편지에는 일본의 법적 책임에 대한 언급은 물론이고, 일본 정부가 이미 인정한 강제의 사실에 대해서조차 언급이 없었다.²⁰⁾ 그 결과는 필리핀에서의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운동의 활성화, 그리고 한국 등 관련국의 피해자, 민간단체 및 정부의 거센 반발이었다.²¹⁾ 그래서 결국 2002년 10월 ‘아시아 여성기금’은 ‘위로금 사업’의 종료를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2007년 3월에는 마침내 해산하기에 이르렀다.²²⁾

18) ‘아시아 여성기금’의 활동에 관해서는, 그 홈페이지(<http://www.awf.or.jp/>) 및 大沼保昭・下村満子・和田春樹, 『慰安婦問題とアジア女性基金』, 東信堂, 1998 참조.

19) <http://www.awf.or.jp/3/korea.html> 참조.

20) 참고로 하시모토 수상의 편지의 전문(<http://www.awf.or.jp/6/statement-12.html>)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정부와 국민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을 통해, 과거의 종군위안부 여러분에게 우리나라(일본 ; 필자)의 국민적인 보상이 행해지는 데 즐음하여, 저의 마음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는, 당시의 군의 관여 아래,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심각하게 해친 문제였습니다. 저는 일본국의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시고 심신 모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전합니다. / 우리들은, 과거의 무게로부터도 미래에의 책임으로부터도 달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일본 ; 필자)로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과와 반성의 마음에 입각하여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고 올바르게 이것을 후세에 전함과 동시에, 당치 않은 폭력 등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관한 문제들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편안한 삶을 보내시기를 마음으로부터 빕니다. / 1996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 하시모토 류우타로오.”

21) 戸塚悅朗, 앞의 책, 214-220쪽 참조.

22) <http://www.awf.or.jp/3/dissolution.html> 참조.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책임의 은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일본 정부는 ICJ 최종보고서,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등에 의해 국제무대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일본의 책임이 인정되고 추궁될 때마다, 그것을 솔직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축소·왜곡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다했다. 즉, 진상규명과 배상 및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일본 정부 자신이 증거를 은닉·인멸하거나, 허위의 공술에 의해 진상규명과 처벌을 방해했다.²³⁾

2. 한국 정부의 대응²⁴⁾

한국 정부는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을 때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했으나, 1991년에 이르러 국민여론이 들끓자 비로소 ‘선(先) 진상규명, 후(後) 배상문제 검토’라는 논리를 세워 일본 정부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다. 그리고 자체 조사와 피해자 신고 접수에 나서서, 1992년 7월 「일제하 군대위안부 실태조사 중간보고서」를 발간했고 그 때까지 155명의 일본군 ‘위안부’ 신고를 접수했다. 또한 1993년 6월 11일에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법률 제4565호)을 제정하여,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에 대해 “국가가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하여” 최소한의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게 되었다(제1조).

하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것이었으며 일관성이나 통일성도 결여한 것이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한편으로 “종군위안부 문제는 일본에 대해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히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차원에서 진행 중인 배상청구소송 등에 관해서는 깊은 관심과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할 것을 약속하거나, 1965년의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이하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책임자 처벌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면서 국제중재재판소에서의 중재소송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도, 한편으로 ‘선 보상, 후 청구’

23) 戸塚悅朗, 앞의 책, 70-77쪽, 141-147쪽, 182-97쪽 참조.

24)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기술은 김창록·이승우, 앞의 책, 29쪽 이하 참조.

의 방침에 따라 1998년 5월에 피해자 1인당 국민성금 300만원을 포함한 생활안정지원금 3,450만원씩을 지급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를 둘러싼 입장에서 난맥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난맥상은 1998년 10월 8일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찌 케이조오(小淵惠三) 수상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선언」²⁵⁾을 발표한 이후 결정적인 것이 되었다. 이 「공동선언」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물론이고 한국 정부도 한일간 과거청산 문제는 “종결”되었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IV. 일본에서의 소송

1. 고소, 고발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국제사회의 강력한 호응을 받으면서도,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의해 문제 해결에 진척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일본에서의 소송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법적 해결 방법에 호소했다.

우선 범죄자의 처벌과 관련하여, 1994년 2월 7일 한국인 피해자 27명이 고소장을 토오쿄오(東京) 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 동시에 정대협도 고발장을 제출하여,²⁶⁾ 일본의 검찰당국에 대해 공식적으로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담당검사는 고소장·고발장을 “곁눈으로 대충 읽은 후 ‘수리할 수 없다’”라며 수리 자체를 거부했다.²⁷⁾

25) “日韓共同宣言—21世紀に向けた新たな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 1998.10.8 (http://www.mofa.go.jp/mofaj/kaidan/yojin/arc_98/k_sengen.html). 이 공동선언을 중심으로 한 한일관계에 대한 분석으로, 김창록, “한일관계와 과거청산 - 한일 ‘신파트너십’을 실마리로 -,” 『國際地域問題研究』(부산대) 17-1, 1999 참조.

26) 고소장은 『法學セミナ-』 472, 1994, 106-107쪽, 고발장은 『역사비평』 25, 1994, 381-394쪽 ; 『法學セミナ-』 478, 1994, 108-112쪽과 『法學セミナ-』 480, 1994, 33-36쪽 참조.

27) 戸塚悅朗, 앞의 책, 24쪽.

일본의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일본에서의 형사소추는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의한 범죄자의 처벌에의 요구는 여기에서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²⁸⁾

2. 민사소송의 제기

그 결과 일본에서의 소송은 민사소송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들 소송과 관련해서는, 때마침 일본 정부가 일본 국회에서 소송의 가능성을 적극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촉발제’ 구실을 했다. 즉, 1991년 8월 14일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이 처음으로 자신이 피해자였음을 밝히며 일본의 책임을 추궁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을 계기로 격화된 일본 국회에서의 논란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1991년 8월 27일의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나이 준지(柳井俊二) 외무성 조약국장의 발언을 통해, 「한일청구권협정」의 의미는 “일한(日韓)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 보호권을 상호 포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닙니다. 일한 양국간에 정부의 입장에서 이것을 외교보호권의 행사로서 문제삼을 수는 없다 이러한 의미입니다”²⁹⁾라고 답변하여,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이 그 청구권의 실현을 요구하는 한국인 피해자들의 소송이 대거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다시 한국인들의 소송이 중국·대만·필리핀 등의 피해자들의 대대적인 소송을 촉발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제국주의국가 일본에 의한 아시아지역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따른 피해의 구제를 위해 일본에서 제기된 소송(이하 ‘대일과거청산소송’)은 2007년 2월 현재 총 81건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중 8건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의한 소송이었고, 다시 그 중 3건이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들에 의한 소송이었다.³⁰⁾

28) 위에서 설명한 ‘2000년 법정’은 이러한 좌절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29) 日本參議院, 『豫算委員會會議錄第三號』, 1991.8.27, 10쪽.

30) 이들 소송에 관한 총괄적인 분석은 김창록, “일본에서의 대일과거청산소송 - 한국인 들에 의한 소송을 중심으로 - ,” 『법사학연구』 35, 2007 참조.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의한 소송은, 1991년 12월 6일에 제기된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소송’, 1992년 12월 25일에 제기된 ‘부산 위안부·근로정신대 소송’, 1993년 4월 5일에 제기된 ‘재일한인 위안부 송신도 소송’이다. 이들 소송에서 원고인 피해자들은,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행위들이 국제법과 일본의 국내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므로, 일본 정부는 그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일본국은 사실에 관해서는 전혀 다투지 않고 오로지 법률론으로만 일관하여, 국가무책임의 법리³¹⁾, 소멸시효·제척기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한 해결을 내세우며 원고측의 주장이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재판소는, 한편으로 피고측이 다투지 않은 원고측의 사실에 관한 주장을 판결문에 상세하게 담아 피해의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피고측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측의 배상과 사죄 요구를 배척했다. 원고가 일부나마 승소한 유일한 예는 1998년 4월 27일의 야마구찌(山口)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下關) 지부의 1심판결이었는데, 이 판결도 ‘국가무책임의 법리’와 ‘소멸시효·제척기간’이라고 하는 법적 장벽을 우회하여, 원래의 피해에 대해서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해, 그 이상의 피해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배려·보증해야 할 조리상의 법적 작위의무”로서 “특별 배상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위법하게 게을리한 데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금 각 30만엔을 지급하라고 선고하는 데 머물렀다.³²⁾

V. 소송의 확산과 종결

1. 미국에서의 소송

한편으로 위와 같은 일본 재판소의 소극성에 지치고, 다른 한편으로 독

31) 폐전 전의 일본에서는 국가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

32) 山口地裁下關支部 平成4年(ワ)349號等, 1998.4.27. 이 판결에 관한 분석으로, 김창록,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해결을 위한 하나의 모색 - 시모노세키판결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167, 1998 ; 金昌祿, “日本軍「慰安婦」訴訟と日本の裁判所の課題,” 池明觀他3編著, 『日韓の相互理解と戦後補償』, 日本評論社, 2002 참조.

일의 기업을 상대로 나찌의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이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Erinnerung, Verantwortung und Zukunft)’라고 하는 재단의 설립에 의한 문제의 해결³³⁾로 이어진 사실에 주목한 피해자들은, 2000년대에 들어서 미국에서의 소송에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찾았다. 1999년 7월 28일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제2차 대전 노예노동 피해자 및 제2차 대전 강제노동 피해자에게 정의에 기초하는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 또는 그들의 상속인에 의한 배상청구소송에 민사소멸시효 규정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않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헤이든[Hayden]법)³⁴⁾이 성립된 것도 피해자들을 고무했다.³⁵⁾

그러한 배경 아래에서, 2000년 9월 18일 한국·중국·대만·필리핀 출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5명이 미국 워싱턴의 연방지방법원에 일본국을 상대로 집단소송(Hwang Geum Joo v. Japan)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소송을 통한 문제 해결의 ‘일본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특별히 주목되었다. 당시 일본에서의 소송에서 원고들이 직면했던 법적 장벽은 주로 국가무책임의 법리와 소멸시효·제척기간이었는데, 전자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특수 일본적 논리였던 까닭에 미국의 법정에서 통용되기 어려웠고, 후자와 관련해서는 헤이든법의 ‘지원’이 기대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법적 장벽을 뛰어넘어 일본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일본국이 패소 판결을 받을 경우 그 영향은 실로 엄청난 것일 터였다.³⁶⁾

하지만,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미국에서의 소송도 결국 승소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 소송에서 원고인 피해자들은, ‘성노예’제도를 설립·유지한 일본 정부의 행위가 전쟁범죄·인도에 대한 죄를 범한 것이며 여러 국제

33) 이에 관해서는 우선, 송충기, “독일의 뒤늦은 과거청산 - 나치하 외국인 강제노역자에 대한 보상을 중심으로 - ,” 『역사비평』 73, 2005 ; 박재영·김영란, “독일의 과거극복, 어디까지 왔나?,” 『동학연구』 26, 2009 참조.

34) 전문은 http://www.leginfo.ca.gov/pub/99-00/bill/sen/sb_1201-1250/sb_1245_bill_19990728_chaptered.html 참조.

35)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한우성, “끝나지 않은 전쟁 - 미국에서 진행중인 ‘일본군위안부’ 및 징용 소송에 대한 보고서 - ,” 『당대비평』 13, 2000 참조.

36) 당시 필자가 만난 일본의 변호사들은 이 소송으로 인해 “일본 정부가 패닉상태에 빠졌다”라고 했다.

조약 및 국제관습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관련 자료의 즉각적인 공개와 사죄 및 배상 등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일본국은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와 ‘정치적 문제’(a political question)의 법리를 내세워 각하를 요구했다. 그리고 때마침 일본의 코이즈미 준이찌로오(小泉純一郎) 정부와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정부도 법정조언 서류(armicus curiae brief)와 정부입장을 밝히는 소명서(statement of interest)를 통해 피고의 주장을 지원했다. 콜럼비아지구 연방지방법원은 2001년 10월 4일 주권면제 혹은 정치적 문제의 법리를 동원하여 피고측의 각하신청을 받아들였으며,³⁷⁾ 콜럼비아지구 연방항소법원도 2003년 6월 27일 및 2005년 6월 28일 각각 원심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³⁸⁾ 그리고 연방대법원이 2006년 6월 21일 이송영장 청원(petition of writ of certiorari)을 거부함으로써³⁹⁾ 이 소송은 종결되었다.⁴⁰⁾

2. 일본에서의 소송의 종결

일본에서의 ‘위안부’소송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000년대에 들어와 일본의 재판소는 대일과거청산소송에서 적지 않은 태도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국가무책임의 법리는 패전 전의 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초한 것이라고 해서 배척하는 판결이 나왔으며, 소멸시효·제척기간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해서 배척하는 판결이 나왔다.⁴¹⁾ 또한 일본 정부와 기업의 행위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었다고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판결도 나왔다.⁴²⁾ 이것은 곧 일

37) Hwang Geum Joo v. Japan, 172 F.Supp.2d 52 (D.D.C.,2001) 참조.

38) Hwang Geum Joo v. Japan, 332 F.3d 679 (C.A.D.C.,2003) ; Hwang Geum Joo v. Japan, 413 F.3d 45 (C.A.D.C.,2005) 참조.

39) Hwang Geum Joo v. Japan, 546 U.S. 1208, 126 S.Ct. 1418 (U.S.,2006) 참조.

40) 이 소송에 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은, Jennifer Kwon, “The Comfort Women Litigation and the San Francisco Treaty: Adopting a Different Principle of Treaty Interpretation,” 73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2005; Christopher P. Meade, “From Shanghai to Globocourt: An Analysis of the ‘Comfort Women’s’ Defeat in Hwang v. Japan,” 35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2002; 최태현, “미국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소송 연구,” 김부자 외 10, 위의 책 참조.

41) 松本克美, “戦後補償訴訟の新展開,”『立命館法學』283, 2002 참조.

본의 재판소에서도 일본 정부와 기업의 법적 우위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그리고 동시에 국가무책임의 법리와 소멸시효·제척기간으로는 애당초 법적 우위를 기대하기 어려운 미국에서의 소송에 대한 대처를 위해,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한 자신의 기준의 주장을 뒤집어, 그것을 핵심적인 방어논리로서 전면에 내세웠다. 즉, 코이즈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이 체결된 1965년 당시 ‘외교 보호권만 소멸되었다’고 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에 의한 과거청 산 요구가 강하게 제기된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청구권이 존재한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단은 재판소가 할 일이다’라고 했던 일본 정부의 종래의 주장을 뒤집어, “‘청구권’에 관해서는, 일한청구권협정 제2조 3에 일률적으로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 협정 제2조 1에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된 것이 된다’라는 것이 확인되어 있다. … ‘청구권’에 관해 어떠한 주장 도 할 수 없고,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은, 한국 및 그 국민이 어떠한 근거에 기초하여 일본국 및 그 국민에게 청구하더라도, 일본국 및 그 국민은 그것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한국 국민이 이 ‘청구권’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일본 ; 필자)에 청구를 했다고 해도, 우리나라(일본 ; 필자)는 그것에 응할 법적인 의무가 없는 것이 된다”⁴³⁾라는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했다.⁴⁴⁾

결국 일본의 재판소가 상급심을 중심으로 이러한 일본 정부의 ‘전향’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는 가운데,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소송’은 2004년 11월 15일 최고재판소의 기각 판결⁴⁵⁾에 의해, 그리고 ‘재일 한인 위안부 송신도 소송’은 2003년 3월 28일 최고재판소의 불수리 결정에 의해 종결되었다. 또한,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의 판결이 내려졌던

42) 申惠丰他2, 『戦後補償と國際人道法 - 個人の請求権をめぐって』, 明石書店, 2005 참조.

43) “平成11年(ネ)第206號 損害賠償請求控訴事件 第12準備書面,” 2003.9.19.

44)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은 김창록, “한일간 과거청산에 있어서의 국가의 논리와 개인의 권리,” 『法史學研究』 30, 2004 참조.

45) 最高裁 平成15年(オ)1895號, 2004.11.29.

‘부산 위안부·근로정신대 소송’의 경우에도 2001년 3월 29일 항소심인 히로시마(廣島) 고등재판소의 판결⁴⁶⁾에 의해 번복된 데 이어, 2003년 3월 25일 최고재판소의 불수리 결정에 의해 종결되었다.

VI. 일본 및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와 새로운 가능성

1.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와 입법 추진의 움직임

1990년대 초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것을 계기로, 1990년대를 관통하여 제국주의 국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따른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책임 추궁이 거세게 일어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일본에 대한 규탄도 거세진 데 대해, 일본 사회는 한편으로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 대해 커다란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고 하는 “의심할 수 없는 이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 여기에서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고 진심으로 사과의 마음을 표명” 한다라는 내용의 무라야마 담화⁴⁷⁾로 상징되는 반성의 자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그러한内外의 분위기에 대해 강한 반발을 드러내기도 했다. 남경학살(南京虐殺)과 ‘위안부’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역사인식 논쟁’⁴⁸⁾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이윽고 ‘역사교과서 문제’로 발전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의 과거책임을 일체 부정하고, 다시금 아시아 각국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배타적 내셔널리즘이 일본 사회에 확산되었다. 이른바 ‘역사수정주의’가 일본의 논단을 석권했고, 1997년에 결성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⁴⁹⁾이 만든,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교과서가 2001년 4월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46) 廣島高裁 平成10年(ネ)278號等, 2001.3.29.

47) “戦後50周年にあたり内閣總理大臣談話” 1995.8.15 (http://www.awf.or.jp/fund/document/doc_11.html),

48) 高橋哲哉, 『戦後責任論』, 講談社, 1999 ; 高橋哲哉編, 『<歴史認識>論争』, 作品社, 2002 참조.

49) <http://www.tsukurukai.com/>

그러한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의 분위기 속에서 2001년 4월에 수상에 취임한 코이즈미 준이찌로오는 2006년까지 재임 중 매년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를 강행하여 아시아의 피해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으며, 그 뒤를 이어 2006년 9월에 수상에 취임한 아베 신조오(安倍晋三)는 한 걸음 더 나아가 2006년 10월 5일의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의 발언을 통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협의의 강제성이 과연 있었는가라는 확증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다”⁵⁰⁾라고 주장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밝힌 1993년의 관방장관 담화 아래 일본 정부가 견지해 온 입장을 뒤집으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퇴행적인 태도는, 2009년 9월에 과거청산 문제의 해결에 대해 상대적으로 전진적인 태도를 보여온 민주당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내각을 출범시킴으로써 다시 한 번 변화의 계기를 맞았다. 특히 위의 2006년 10월 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수상을 상대로 ‘위안부’ 문제에 관해 추궁했던 칸 나오토(菅直人) 민주당 의원이 1910년 한일조약 체결 100년에 해당하는 2010년 6월에 수상에 취임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이 마련된 것으로서 주목되었다.⁵¹⁾

민주당 내각 출범 이후 특별히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 것은 입법을 통한 해결이다. 소송을 통한 해결의 노력이 최종결실을 거두지 못한 채 종결된 이후, 2007년 7월에 통과된 미국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을 시작

50) 日本衆議院, 『豫算委員會會議錄第二號』, 2006.10.5, 37쪽.

51) 다만, 2010년 8월 10일에 발표된 칸 수상의 담화(“內閣總理大臣談話,” 2010.8.10 [http://www.kantei.go.jp/jp/kan/statement/201008/10danwa.html])는, “3.1독립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정치적·군사적 사정 아래에서, 당시의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하여 이루어진 식민지지배에 의해, 나라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궁지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다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해, 다시 한 번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표명”하기는 했지만, 5월 10일에 한일 양국의 지식인들이 서울과 토오쿄오(東京)에서 발표한 “‘한국병합’ 100년에 즈음한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에서 “병합조약 등은 … 당초부터 null and void였다고 하는 한국 측의 해석이 공통된 견해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불법성을 천명한 데에는 미치지 못했다.

으로 이어지고 있는 각국의 ‘위안부’ 결의안 채택⁵²⁾과 2008년 3월 타카라즈카(宝塚)시 의회를 시작으로 2010년 3월 현재 일본 국내의 20개 시의회에 의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의견서 가결에 힘입어, 유리한 국회 환경 속에서 「전시(戰時) 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 해결의 촉진에 관한 법률안」⁵³⁾의 성립을 위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⁵⁴⁾

위의 「법률안」은, 2001년 3월 이후 8회에 걸쳐 참의원에 제출되었으나 결국 가결되지 못하고 폐안이 되었던 법안으로서, “구 일본 육해군의 관여 아래, 여성에 대해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성행위의 강제가 이루어지고, 이에 의해 그 여성들의 존엄과 명예가 현저하게 손상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사죄의 뜻을 표하고 그들 여성의 명예 등의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를 우리나라(일본 ; 필자)의 책임으로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1조), 내각총리대신을 회장으로 하는 (11조)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 해결 촉진회의를 내각부에 설치하여 (10조), “기본방침을 정”하고(4조), “관계국 정부 등과 협의”하고(5조), “피해자의 인권 등에 대해 배려”하고(6조), “국민의 이해를 얻”어(7조), “금전의 지급을 포함”하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3조)하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와 헌법소원

한편 한국 정부는 2002년 2월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노무현 정부는, 김영삼·김대중 정부 당시에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1995.12.21) 등에 의한 국내적 과거청산의 흐름을 이어받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2005.5.31)을 제정하는 한편, 그 흐름을 한일 관계에까지 확대하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2004.3.5),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4.3.22)

52) 각국의 결의문은 http://www.historyfoundation.or.kr/?sub_num=302 참조.

53) <http://houseikyoku.sangiin.go.jp/sanhouichiran/sanhoudata/169/169-027.pdf>

54) http://www.jca.apc.org/ianfu_ketsugi/120.html 참조.

등을 제정했다. 그리고 2005년 8월 26일에는 한일회담 관련문서를 전면 공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것은 위의 문서 공개에 즈음하여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가 내린 결정⁵⁵⁾이다.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2005년 8월 26일 “한일청구권협정의 법적 효력 범위”에 관해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이라고 정리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제 강점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외교적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하고,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 인정 등 지속적인 책임 추궁을 하는 한편, UN인권위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한편으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한일 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는 해결되었지만, “일본 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으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라고 정리함으로써, 종래 한국 정부의 혼란된 입장에서 벗어나, 일본 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의 적극적인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대표적인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제시함으로써 그 책임 추궁의 가능성을 더욱 강하게 인정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표명에 주목하여, 2006년 7월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09명이 외교통상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헌법소원⁵⁶⁾을 제기했다. 청구인측은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55)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개최,” 2005.8.26.

일본 정부와의 관계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인 청구인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⁵⁷⁾ 이에 대해 피청구인측은 외교적 보호권은 “‘국가’에게 귀속되는 고유의 권리”로서 “고도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작위의무도 인정할 수 없고 기본권 침해도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⁵⁸⁾ 이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2009년 4월 9일 공개변론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나,⁵⁹⁾ 2010년 10월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VII. 성과와 과제 - 맷음말에 대신하여

1. 법적 노력의 성과와 한계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 피해자들의 주장과 국제사회의 호응, 그에 대한 일본 정부 및 한국 정부의 초기 대응, 일본과 미국의 법원에서의 소송,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최근의 입장 변화와 새로운 가능성 등을 정리해 보았다.

위의 정리를 통해 확인되는 것처럼,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간 과거청산 과제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법적 논의가 이루어진 문제로서, 그에 관한 일본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적 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의 법원이라고 하는 현실의 법정에서는 각종 법적 장벽에 막혀 결국 피해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법적 노력이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선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결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를 강요한 행위가 국가적 범죄이

56) 2006현마788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

57) 청구인(이용수 외 108명), “헌법소원심판청구서,” 2006.7 참조.

58) 피청구인(외교통상부장관), “변론요지서,” 2009.3.5 참조.

59) 이 공개변론에서 필자가 청구인측 참고인으로서 제시한 의견은, 김창록, “일본군 ‘위안부’ 헌법소원,” 『법학논고』(경북대) 31, 2009 참조.

며, 그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처벌과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거듭 선언됨으로써, 그와 같은 법적인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게 된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한국에서의 법률 제정을 통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다음으로, 한국인 피해자들이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반세기 가까이 가슴 속에 묻어둘 수밖에 없었던 피해를, 일본의 재판소라고 하는 공적인 공간에서 주장할 수 있었고, 다수의 일본의 재판소가 판결문이라고 하는 공적인 문서에서 그 피해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피해의 사실을 인정한 것도, 피해에 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기록하는 것 자체가 피해의 구제를 위한 첫걸음⁶⁰⁾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중요한 성과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또한 비록 항소심 이후 번복되기는 했지만, 일본 야마구찌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지부가 입법부작위를 이유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한 것은, 그 자체가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여 보수적인 일본 재판소의 벽을 넘어섬으로써 “‘위안부’ 피해자를 어떻게든 구제하고자 하는 재판관의 사명감조차 느끼게 하는 획기적인 판결”⁶¹⁾이었다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일본에서의 입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토대가 되기도 했다는 점도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처벌과 배상을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현실의 한계’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

위와 같은 ‘현실의 한계’와 관련하여, 해당초 법적 해결에 매달린 것이

60)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지원자들과 교류하는 가운데 일정한 피해의 구제에 이르게 되는 모습에 관해서는, 재일조선인 ‘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 - 재일조선인 ‘위안부’ 송신도의 투쟁 -』(DVD), 2010 참조.

61) 花房俊雄, “『慰安婦』問題に割期的判決,” 戰爭責任を問う・關釜裁判を支援する會, 『關釜裁判判決文全文』, 1998, 3쪽.

문제였다고 하는 ‘현실론’이 주목된다.

‘아시아 여성기금’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오오누마 야스아키(大沼保昭) 교수는,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해야 함에도 도의적 책임이라는 형태로 이를 회피하고, 기금은 그러한 정부의 책략에 편승해버렸다”라는 일본군 ‘위안부’ 지원단체, 학자, NGO, 저널리스트 등의 “법적 책임론의 오류”를 질타하며, “법적인 책임과는 다른 차원에서, 다른 근거에 기초하여, 진지한 진심어린 사죄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수행될 수 있는” “도의적 책임”을 강조한다.⁶²⁾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법적 책임’은 ‘도의적 책임’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잣대였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다가 관련 자료가 발견되자 서둘러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전한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배상의 문제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끝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일본 정부에 의한 배상이 아니라 ‘아시아 여성기금’을 통한民間모금에 의한 위로금의 전달이라는 방식이 채택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그 점에서 ‘아시아 여성기금’은, “피해자로부터 국가보상론 등의 요구가 제기”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숨을 죽이고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려고 한 “일본 정부의 체질”⁶³⁾을 전제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

1990년대 초의 시점에서 존재 자체를 부정한 문제가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그 자체로서 모순일 뿐만 아니라, ‘도의적 책임론의 오류’를 입증해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일본 정부가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면서도 ‘법적 책임’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 책임’을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응변으로 말해주는 것일 터이다.

62) 大沼保昭, 『「慰安婦」問題とは何だったのか - メディア・NGO・政府の功罪』, 中央公論新社, 2007, 157, 163-164쪽. 이와 대립되는 입장에 관해서는, 大島考一・有光健・金英姫編, 『「慰安婦」への償いとは何か - 「國民基金」を考える』, 明石書店, 1996 참조.

63) 大沼保昭, 위의 책, 170쪽.

3. 법적 해결을 위해

따라서 지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한 해결이라는 주장을 거두지 않을 일본의 행정관료들이 스스로 그 해결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한국인들에 의한 소송을 전면적으로 검토한 후 2003년 3월 25·27·28일 사흘 동안에 거의 모든 피해유형에 걸친 무려 6건의 상고 기각 판결 내지 불수리 결정을 집중적으로 선고한 상황에서, 일본의 재판소가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여줄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일본 국회에 의한 입법적 해결이다. 그 점에서 위에서 살펴본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 해결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주목된다. 이 「법률안」이 담고 있는 “사죄”와 “금전의 지급을 포함”한 “명예 등의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일본의 “책임”이 ‘법적 책임’으로서 자리매김된 가운데, 「법률안」의 성립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급박한 과제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특히 한국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 정부는 2005년 8월 26일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 인정 등 지속적인 책임 추궁”을 하기로 함으로써 스스로의 작위 의무를 인정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위 「법률안」의 조속한 성립을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부작위 위험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덧붙여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해결은 동북아질서의 법적 틀에 관한 것이라는 점도 주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의 소송에서, 유대인들의 독일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와는 달리,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적극적으로 두둔하고 나섰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정부가 이렇게 ‘차별’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미국의 법원에 의해 일본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경우 자칫 자신에 의해 짜여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질서가 혼들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토오쿄오재판, 대일강화조약, 한일조약, 華日平和條約, 중일선언, 중일조약 등의 법적 장치들에 의해 떠받혀지고 있는 것이다. 그 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파고드는 것은 곧 현재의 세계질서와 그 속에서의 동북아질서 및 한일관계의 법적 틀을 근원적으로 재점검하는 작업, 즉 “전후 국제질서의 정통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64)이기도 하다.}

주제어 : 일본군 ‘위안부’, 정신대, 성노예,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 과거청산

64) 阿部浩己, “戦後責任と和解の模索,” 倉澤愛子他5編, 『20世紀の中のアジア・太平洋戦争』, 岩波書店, 2006, 351쪽.

참 고 문 헌

〈자료〉

“‘위안부문제는 과거청산 아닌 인권문제’,” 『조선일보』 1998.2.26 20:57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1998022670472)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개최,” 2005.8.26

청구인(이용수 외 108명), “현법소원심판청구서,” 2006.7

피청구인(외교통상부장관), “변론요지서,” 2009.3.5

“慰安婦關係調査結果發表に關する河野内閣官房長官談話,” 1993.8.4

(<http://www.mofa.go.jp/mofaj/area/taisen/kono.html>)

“戦後50周年にあたり 内閣總理大臣談話,” 1995.8.15

(http://www.awf.or.jp/fund/document/doc_11.html)

“日韓共同宣言—21世紀に向けた新たな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 1998.10.8

(http://www.mofa.go.jp/mofaj/kaidan/yojin/arc_98/k_sengen.html)

“平成11年(ネ)第206號 損害賠償請求控訴事件 第12準備書面,” 2003.9.19

“内閣總理大臣談話,” 2010.8.10 (<http://www.kantei.go.jp/jp/kan/statement/201008/10danwa.html>)

“戦時性的強制被害者問題の解決に關する法律案” (<http://houseikyoku.sangiin.go.jp/sanhouichiran/sanhoudata/169/169-027.pdf>).

日本參議院, 『豫算委員會會議錄第一九號』, 1990.6.6

日本參議院, 『豫算委員會會議錄第三號』, 1991.8.27

日本衆議院, 『豫算委員會會議錄第二號』, 2006.10.5

山口地裁下關支部 平成4年(ワ)349號等, 1998.4.27

廣島高裁 平成10年(ネ)278號等, 2001.3.29

最高裁 平成15年(オ)1895號, 2004.11.29

Hwang Geum Joo v. Japan, 172 F.Supp.2d 52 (D.D.C.,2001)
Hwang Geum Joo v. Japan, 332 F.3d 679 (C.A.D.C.,2003)
Hwang Geum Joo v. Japan, 413 F.3d 45 (C.A.D.C.,2005)
Hwang Geum Joo v. Japan, 546 U.S. 1208, 126 S.Ct. 1418 (U.S.,2006)
UN Doc. E/CN. 4/1996/53/Add. 1
UN Doc. E/CN.4/Sub.2/1998/13/Add. 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http://www.womenandwar.net/>
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會 <http://www.tsukurukai.com/>
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國民基金 <http://www.awf.or.jp/>
http://www.historyfoundation.or.kr/?sub_num=302
http://www.jca.apc.org/ianfu_ketsugi/120.html

〈단행본〉

- 김명기, 『정신대와 국제법』, 법지사, 1993
김창록 · 이승욱,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여성부 연구보고서), 2003
도츠카 에츠로 / 박홍규 역, 『위안부가 아니라 성노예이다』, 소나무, 2001
동북아역사재단 편, 『한일 역사현안 관련 일본군 위안부 연구논저 목록 (상, 하)』, 동북아역사재단, 2009 ([http://www.historyfoundation.or.kr/DATA/BBS1/연구논저-위안부\(상\).pdf](http://www.historyfoundation.or.kr/DATA/BBS1/연구논저-위안부(상).pdf), [연구논저-위안부\(하\).pdf](http://www.historyfoundation.or.kr/DATA/BBS1/연구논저-위안부(하).pdf))
재일조선인 ‘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 - 재일조선인 ‘위안부’ 송신도의 투쟁 -』(DVD), 2010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 -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보고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1
VAWW-NET Japan編, 『女性國際戰犯法廷の全記錄』 I · II, 凱風出版, 2002
高橋哲哉, 『戰後責任論』, 講談社, 1999

- 高橋哲哉編, 『<歴史認識>論争』, 作品社, 2002
吉見義明, 『従軍慰安婦』, 岩波書店, 1995
大島考一・有光健・金英姫編, 『「慰安婦」への償いとは何か - 「国民基金」を考える』, 明石書店, 1996
大沼保昭, 『「慰安婦」問題とは何だったのか - メディア・NGO・政府の功罪』, 中央公論新社, 2007
大沼保昭・下村満子・和田春樹, 『「慰安婦」問題とアジア女性基金』, 東信堂, 1998
大沼保昭・岸俊光編, 『慰安婦問題という問い』, 効草書房, 2007
申惠丰他2, 『戦後補償と国際人道法 - 個人の請求権をめぐって』, 明石書店, 2005
戸塚悦朗, 『日本が知らない戦争責任 - 日本軍「慰安婦」問題の眞の解決へ向けて』, 現代人文社, 2008

〈논문〉

- 김창록,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해결을 위한 하나의 모색 - 시모노 세키판결을 중심으로 - ,” 『인권과 정의』 167, 1998
_____, “한일관계와 과거청산 - 한일 신파트너십’을 실마리로 - ,” 『國際地域問題研究』(부산대) 17-1, 1999
_____, “한일간 과거청산에 있어서의 국가의 논리와 개인의 권리,” 『法史學研究』 30, 2004
_____, “일본에서의 대일과거청산소송 - 한국인들에 의한 소송을 중심으로 - ,” 『법사학연구』 35, 2007
_____, “일본군 ‘위안부’ 헌법소원,” 『법학논고』 (경북대) 31, 2009
박재영 · 김영란, “독일의 과거극복, 어디까지 왔나?,” 『동학연구』 26, 2009
송충기, “독일의 뒤늦은 과거청산 - 나치하 외국인 강제노역자에 대한 보상을 중심으로 - ,” 『역사비평』 73, 2005
양현아, “증언과 역사쓰기 - 한국인 ‘군위안부’의 주체성 재현,” 윤해동

- 외4 엮음, 『근대를 다시 읽는다 2』, 역사비평사, 2006
- 조시현,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 김부자 외 10,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2009
- 양현아, “2000년 법정을 통해 본 피해자 증언과 법 언어의 만남,” 김부자 외 10,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2009
- 최태현, “미국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소송 연구,” 김부자 외 10,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2009
- 한우성, “끝나지 않은 전쟁 - 미국에서 진행중인 ‘일본군위안부’ 및 징용소송에 대한 보고서 - ,” 『당대비평』 13, 2000
- 高橋哲哉, “二〇一〇年の戦後責任論—「応答の失敗」からの再出發,” 『世界』 800, 2010
- 金昌祿, “日本軍「慰安婦」訴訟と日本の裁判所の課題,” 池明觀他3編著, 『日韓の相互理解と戦後補償』, 日本評論社, 2002
- 阿部浩己, “戦後責任と和解の模索,” 倉澤愛子他5編, 『20世紀の中のアジア・太平洋戦争』, 岩波書店, 2006
- 花房俊雄, “「慰安婦」問題に劃期的判決,” 戰爭責任を問う・關釜裁判を支援する會, 『關釜裁判判決文全文』, 1998
- Christopher P. Meade, “From Shanghai to Globocourt: An Analysis of the ‘Comfort Women’s’ Defeat in Hwang v. Japan,” 35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2002
- Jennifer Kwon, “The Comfort Women Litigation and the San Francisco Treaty: Adopting a Different Principle of Treaty Interpretation,” 73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2005

A Legal Reappraisal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Kim, Chang-Rok*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s a serious ‘legal’ issue which should be resolved before the victims, who are in their 70’s or 80’s, breathe their last.

The issue was raised by Korean women in the late 1980’s and has been discuss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The legal conclusions are that those Japanese who had engaged in the Japanese ‘comfort women’ issue committed the international laws including the crime against humanity, and that they should be punished and Japan should apologize and make compensation to the victims.

The Japanese government, however, did not accept its liability. So the victims raised lawsuits against Japan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Even though the lawsuits made the facts of injury clear and encouraged the movement of the enactment of a law on the issue, they all ended against the plaintiffs.

There remains the last ‘legal’ resolution, that is the enactment of a law including the apology and compensation by the Japanese assembly.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urge the Japanese government and assembly for the prompt enactment of the law.

Key Words :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exual Slavery, Legal Liability and Moral Liability, Righting the Wrongs of the Past

* Profess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